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854

발의연월일: 2020. 9. 14.

발 의 자:고영인·조승래·민병덕

전용기 · 김철민 · 최혜영

전재수 · 최종윤 · 이장섭

이동주・천준호・정춘숙

오기형 · 김남국 · 박광온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2월 초등학생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런 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한 이후 유사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처분인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이 미비하여 유사 동일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에 실효성이 떨어짐.

특히,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특정범죄를 저지른 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부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가 특정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등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함(안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2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제3항).

법률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야간 등"을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3.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 지역 출입금지(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 관은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3의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
- 5. 음주 행위의 금지
- 6.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의 금지
- 7.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만, 「형법」 제2편제32장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전부착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2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를 "제9조의2제1항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3호의2의"로, "3년"을 "5년"으로,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징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2제1항제1호·제2호"를 "제9조의2제1항제4호·제5호"로, "제2호의2 또는 제5호의"를 "제6호·제7호의"로, "1천만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전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	제9조의2(준수사항) ①
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	
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	
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u>야간 등</u> 특정 시간대의 외출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
제한	<u>간 등</u>
2. • 2의2. (생 략)	2. • 2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의3.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u>
	터 이외 지역 출입금지(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은 동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3. (생략)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 4. (생략)
-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

 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신 설>

- ② (생략)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금지

- 4. (현행과 같음)
- 5. 음주 행위의 금지
- 6.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의 금지
- 7.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③
<u>다만, 「형</u>
법」 제2편제32장 제297조(강
<u>간)</u> · 제297조의2(유사강간) · 제
<u>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u>
<u>01</u> 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는 전자장치 전부착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의2

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저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 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 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u>3년</u> 이하의 <u>징역 또는</u>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 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①
제9조의2제1
<u>항제1호 • 제2호·제2호의2 • 제2</u>
<u>호의3ㆍ제3호ㆍ제3호의2의</u>
<u>5년</u> <u>징역에</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9조의2제1항제4호ㆍ제</u>
<u>5호-제6호 • 제7호의</u>
<u>3</u> 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u>
천만원